

第108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1號(附錄)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稅減免條例改正條例(案) ..... 5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12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住宅改良再開發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 ..... 15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地下水條例(案) ..... 18面  
 6. 2001年度 財務局 主要業務計劃 ..... 23面  
 7. 2001年度 都市管理局 主要業務計劃 ..... 55面  
 8. 2001年度 建設交通局 主要業務計劃 ..... 77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785
-----------	-----

제출년월일 : 2001. 1.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재물조사 지침에 따라 매2년마다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바, 2000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 조사결과 개선대책으로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 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및 매각가격 감정대상을 조정토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2000년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이 서울시를 통하여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조정(안 제15조제3항)

-서울시와 소속사업소,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에 행하는 소요조회 기준을 현행 장부상 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을“단가 2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확대 조정함.

※ 현행 1천만원 이상 물품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도 소요조회 함.

○ 불용품의 감정가액 기준 조정(안 제16조제4항)

-감정대상을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

3. 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
- 2000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 시달(서울시 회계43500-3433, 2000. 8.23)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중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중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로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한다.

제15조제3항 단서중 “물품취득가격(장부가가격기준)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을 “물품취득가격(장부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단서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6
----------	-----

제출년월일 : 2001. 1.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대상을 재검토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2001년부터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므로 관련 면허세 감면을 조례 폐지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민주택 지원의 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함(안 제8조)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9조).
- 기타 감면규정은 현행 감면수준을 유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행함.

3. 개정근거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서울특별시 세정13415-1301호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에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제7조의2(서울특별시중로구 역사문화미관지구내 한옥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나목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내의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후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2.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1구내에 한옥과 한옥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한옥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한다.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8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0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

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6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

제18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년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년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 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1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7
----------	-----

제출일자 : 2001. 1.

제출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부등 열람의 제한 조항 삭제(안 제4조)
- 각종 인허가·신고·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삭제(안 제7조제2항)

3. 개정근거

○ 2000년 제1차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2000. 9. 28)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 (공부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p>	<p>&lt;삭제&gt;</p>
<p>제7조 (징수시기) ①(생략)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p>	<p>제7조 (징수시기) ①(현행과 같음) &lt;삭제&gt;</p>

#### 4. 서울특별시종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0
----------	-----

제출년월일 : 2001. 1.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 1. 개정이유

2000년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종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중 건축합의기간 및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평가, 가격평가 절차, 국공유지의 연고권등, 가격평가 절차의 규정을 삭제 및 개정토록 심의 의결함으로서 동조례의 일부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

-건축합의기간 조항 삭제(제14조)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 조항 삭제(제18조)

-가격평가절차 조항 삭제(제19조제2항)

○상위법(도시재개발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 개정

-국·공유지의 연고권 인정면적 완화개정 (제17조제3항)

-가격평가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중 자체확인 가능한 토지대장,가옥대장 삭제(제19조제1항제3호)

##### 3. 개정근거

○행정규제기본법제4조(규제법정주의), 제5조(규제의 원칙)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

#####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주택개발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택개발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중 “165m”를 “200m”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토지대장,가옥대장,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를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4조(건축합의기간)</b>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의 건축합의기간은 시행기간 만료일 1년전까지로 한다.</p>	<p>&lt;삭 제&gt;</p>
<p><b>제17조(국공유지의 연고권등) ①~②(생 략)</b>                      ③연고권 인정면적은 구청장이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16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설립된 공공 또는 공익에 기여되는 건축물과, 적법건축물로서 개량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존치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p>	<p><b>제17조(국공유지의 연고권등) ①~②(현행과 같음)</b>                      ③-----                      -----200㎡-----                      -----                      -----                      -----</p>
<p><b>제18조(토지건축물의 권리가액 평가)</b>                      관리처분계획을 평가식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p>	<p>&lt;삭 제&gt;</p>
<p><b>제19조(가격평가 절차) ①</b>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영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분양예정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가격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2.(생 략)                      3.토지대장, 가옥대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1부                      4.~5.(생 략)</p>	<p><b>19조(가격평가 절차) ①</b>-----                      -----                      -----                      -----                      -----                      1.~2.(현행과 같음)                      3.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                      4.~5.(현행과 같음)</p>
<p><b>②기타 가격평가방법, 감정수수료의 부담 및 징수</b>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lt;삭 제&gt;</p>

5.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안)

의안 번호	791
----------	-----

제출년월일 : 2001. 1.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일부 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양 되었기에 우리 구 지하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음(안 제3조)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함.(안 제4조)
- 필요한 경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정하여 허가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 일반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토록 함.(안 제6조)
- 지하수보전구역내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함.(안 제7조)
-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6인에서 10인으로 함.(안 제10조)
-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2조)
-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관측용으로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 운영함.(안 제13조)

3. 제정근거

- 지하수법
-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4. 예산수반사항 : 필요없음

5. 조례(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하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령(이하“영”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건설교통부령”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하 “환경부령”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라 함은 양수시설을 갖추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동력장치”라 함은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
3. “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지하수가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에 대비해 설치하는 보호벽, 보호공 등 방호시설과 지하수의 이용량과 수질 및 수위측정 등에 필요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의 설비를 말한다.
4.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의 조사)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범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기타 지하수의 부존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구청장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사전에 종로구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의 설정) 구청장은 영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대량이고 장기화되어 당해 지역의 지반침하 또는 지하수의 고갈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이용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

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1.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보전구역안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3. 기타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
- ②지하수 개발·이용자, 기타 이해 관계자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요청을 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타당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 ①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동 구역안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당해 보전구역의 도로변이나 출입이 빈번한 곳에 보전구역 지정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검사 부적합 조치) 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30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2항에 의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주요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지하수의 조사 및 장기 활용계획
4. 지하수 개발·이용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하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종로구의 관계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간사는 토목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원상복구) ①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관정을 원상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에 의한 원상복구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계획에는 복구할 관정의 개발·이용자 또는 소유자, 폐공발생위치, 사유, 처리자, 복구일자 및 복구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 확인하고 원상복구업체, 공사사진 등 원상복구에 관한 서류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영 제24조제3항 각호 및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케이싱 등의 인발제거가 어려울 경우 지하 1.5~2.0M 깊이의 터파기를 하여 케이싱을 절단제거한다.

2. 불투수성 재료의 주입 공정이 있을 경우 24시간 이상 고결 시킨 후 수축 또는 주변 토양 침투 등을 보완하면서 지표부 표면처리 작업을 실시한다.

제13조(지하수관측정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관측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 영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1. 鐵路區議會 第108回臨時會  
財務建設委員會 報告資料

# 2001年度 主要業務計劃



## 財 務 局

## 목 차

- 일반 현황
-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재무과
  - 세무 1과
  - 세무 2과
  - 지적과
- 당면주요업무

# 일 반 현 황

## 일 반 현 황

### 1. 인력 및 주요행정장비 현황

#### □ 직원현황(4과 15업무담당)

과별	계	정원							기능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원	
계	118	1	4	16	29	40	26	2	
	120	1	4	16	34	40	24	1	
재무과	21	1	1	4	7	6	1	1	
	20	1	1	4	7	7	0	0	
세무1과	33		1	4	10	7	11	0	
	36		1	4	13	10	7	1	
세무2과	38		1	4	7	17	8	1	
	39		1	4	8	12	14	0	
지적과	26		1	4	5	10	6	0	
	25		1	4	6	11	3	0	

#### □ 행정장비

구분	전자복사기	컴퓨터(PC)	프린터기	팩시밀리	카메라	기타
계	9	146	48	5	5	2
재무과	1	25	13	1	3	
세무1과	2	41	10	1	1	
세무2과	2	42	10	1		
지적과	4	38	15	2	1	2 (인증기)

## 2. 부서별 소관업무 현황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재무과	재산관리	○국·공유 집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재산의 총괄 및 재산관리관 지정	
	계 약	○공사도급·물품구매 계약등 ○조달물품 구매 및 출입업자 등록, 물품관리	
	지 출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자금관리 및 지출증빙서 관리 ○회계검사 및 수입증지 수불	
세무1과	세입총괄	○세입총괄 및·현계업무(일반회계, 세외수입, 국세) ○소관세목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정, 세입징수 보고	
	재 산 1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취소, 변경 및 감면처리 ○소관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지역개발세와 목적세의 부과·징수·감액결의 및 세원조사	
	재 산 2		
	조사평가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 변경 및 감면, 징수유예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의 부과·징수·감액결의 및 세원조사	
세무2과	세무관리	○소관세목의 압류, 해제 및 공매 ○소관세목의 과오납 환불·충당, 체납부 정리	
	체납관리	○과년도 지방세 체납정리계획수립 및 총괄 ○체납지방세 징수 및 결손처분·채권압류·해제 ○부동산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세 무 1	○자동차세, 면허세, 차량취·등록세, 경주마권세 부과징수, 감액 ○차량 압류 및 해제	
	세 무 2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징수, 감액 ○소관세목에 대한 세원발굴 및 과세자료 관리	
지적과	지 정	○건축물대장관리 및 발급 ○부동산중개업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공인중개사시험관리	
	토지관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액 징수 ○부동산계약서 검인 및 행정소송수행 업무 ○외국인 토지관리,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업무	
	지적관리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토지이동(분할 등 측량수반 합병)처리 ○측량성과검사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가조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관련 업무 ○공공용지 토지이동(합병, 지목변경)처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발급 ○토지이동(지목변경)처리	

### 3.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

(2001. 1.31현재)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비고
	건수	면적(㎡)	필지수	면적(㎡)	건수	면적(㎡)	
계	3,394	473,042	3,383	455,649	11	17,393	
국유재산	2,288	324,399	2,285	317,590	3	6,809	
시유재산	349	105,610	346	98,245	3	7,365	
구유재산	757	43,033	752	39,814	5	3,219	

### 4. 자금관리 현황

(2001. 1.31현재)

구 분	합 계(백만원)	정 기 예 금	보 통 예 금
계	48,531	48,200	331
일 반 회 계	28,803	28,600	203
특 별 회 계	19,728	19,600	128

## 5. 세 정 현 황

### □ 토지 및 건물

(단위 : 건/천㎡)

구 분	계			건 물		
	건 수	면 적	구성비(%)	건 수	면 적	구성비(%)
계	92,012	23,831	100.0	52,728	10,488	100.0
주거용	44,407	5,016	21.0	23,824	3,804	36.2
영업용	22,975	2,824	11.9	28,277	6,374	60.7
비과세	24,630	15,991	67.1	627	310	3.1

### □ 과세대상 법인

(단위 : 업체수)

계	자 본 금 100억이상	50억이상	10억이상	1억이상	1억미만
2,695	48	31	95	999	1,522

### □ 사업소세 과세대상

(단위 : 업체수)

사업소세 과세대상 업체			비 고
계	제 산 할	종 업 원 할	
1,532	1,251	281	

## 6. 지적 현황

### □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단위 : 매)

지 적 공 부					건 축 물 대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 치 지적부	계	건축물	구건축물
59,488	631	447	32	624	116,112	62,127	53,985

###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비 고
계	322	8	14	300	

### □ 공공용지

(단위 : 필지)

구 분	계	도 로	대 지	임 야	구 거	공 원	하 천	기 타
계	17,368	8,692	6,800	458	636	187	182	413

###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명)

구 분	계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계	485	9	191	285

#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재 무 과

1. 국·공 유 재산 정비
2. 2001년 세외수입 증대
3.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 재무과소관

## 1. 국·공유재산 정비

### □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 실시(계속사업)

- 총 대상 : 3,394필지(국 2,288, 시 349, 구 757)
- 조사대상 : 2,161필지(청운~가회동 미실시분, 종로1·4가~승인동)  
※ 2000년도 실태조사 추진실적 - 1,233필지(측량 212필지 실시)
- 일정별 추진계획
  - 1/4분기 : 351필지(청운~가회동, 2000년 실태조사 미실시분)
  - 2/4분기 : 579필지(종로1·4가~종로5·6가동)
  - 3/4분기 : 673필지(이화 ~ 명륜3가동)
  - 4/4분기 : 558필지(창신1 ~ 승인2동)

### □ 국·공유재산 전산화

- 국·시유지는 전산화이후 변동사항 수정입력
- 구유재산 전산화
  - 입력대상 : 757건(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추진)
  - 소요예산 : 3,732천원(보조인력 인건비)

### □ 점유재산에 대한 매각 홍보 및 유희토지 활용

- 점유재산 매각 및 대부 홍보
  - 종로사랑지 게재, 팜프렛 제작배포
  - 지역신문, 케이블TV 등 언론매체 활용
  - 무단점유자 및 대부사용자에게 안내공문 발송
- 유희토지 활용
  - 실태조사 결과 재산현황에 따라 주차장, 녹지조성 등 활용방안 강구

## 2. 2001년 세외수입 증대

### □ 2001년 세입 목표

(단위 : 백만원)

세 목 명	2001년 목표액 (A)	2000년				증 감	
		당초예산 (B)	1월~12월 정 수 액	01.1월이후 예 상 액	계 (C)	예산대비 (A-B)	전망대비 (A-C)
계	2,629	1,469	4,163	97	4,260	1,160	△1,631
재산임대수입	130	97	48	85	133	33	△3
재산매각수입	1,080	600	2,140	10	2,150	480	△1,070
변 상 금	140	130	385	2	387	10	△247
이 자 수 입	956	434	1,168	0	1,168	522	△212
증 지 수 입	240	170	325	0	325	70	△85
불용품매각대금	50	5	47	0	47	45	3
위 약 금	3	3	5	0	5	0	△2
과 년 도 수 입	30	30	45	0	45	0	△15

### □ 2000년 결산전망 - 당초예산 1,469 → 4,260백만원(290%증가)

- 재산매각수입 : 창신·창림아파트부지 매각수입등(1,885백만원)
- 변 상 금 : 창신·창림아파트부지등(변상금·사용료:297백만원)
- 이 자 수 입 : 유희자금 증가 및 장기예치(734백만원)  
※구금고 평잔액 : 170억원
- 증 지 수 입 : 종로구조례개정으로 수수료인상(155백만원)

### □ 2001년 목표증대 방안 - 증가액 1,160백만원

- 재산매각수입 : 청운,명륜3가동 경로당 매각예정(570백만원)
- 재산임대수입 :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귀속금비율 인상(30%→50%)
- 변 상 금 : 실태조사를 통한 산규세원 발굴 및 귀속금비율 인상(30%→40%)
- 이 자 수 입 : '98 ~ 2000년도 실제 이자수입 참고 예측
- 기 타 : 조례개정으로 수수료 인상, 대형불용품 매각예정

### 3.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 □ 현 황(2001. 1.31현재)

(단위:백만원)

내역 구분	계		1년		6개월		기타(1·3개월)		보통 예금
	계좌	금액	계좌	금액	계좌	금액	계좌	금액	
계	241	48,531	98	19,600	34	6,800	109	21,800	331
일반회계	143	28,803	-	-	34	6,800	109	21,800	203
특별회계	98	19,728	98	19,600	-	-	-	-	128

#### □ 구금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

- 일일 세입자금 및 지출금액 비교분석 실시
- 세입자금 일정액(2억)이상 정기예치 이자수입 증대
- 보통예금잔액 일일점검 일정액(2억)이상 정기예치
- 월별 이자수령 합산액이 일정액(2억)이상 정기예치
- 각종 공과금 마감일 납부
- 불요불급 자금지출의 억제
- 정기적 자금운영분석(주1회) 이자수입 극대화추진

#### □ 정기예금 금리 인하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비	기준금리 및 약정조건
1개월이상	5.6	5.3	△0.3	5대은행 평균실세금리 (조흥,외환,산한,주택,국민) 에 0.2% 가산 ※ 보통예금 : 2%
3개월이상	6.4	6.1	△0.3	
6개월이상	6.9	6.5	△0.4	
1년 이상	7.3	6.8	△0.5	

## 세 무 1 과

1. 2000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2. 2001년 자치구 세입목표
3. 세목별 과징계획
4. 법인 세무조사
5. 세외수입 관리 강화

# 세무1과소관

## 1. 2000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목	2000년 세입목표	2000년도 세액징수전망				'99년 징수실적	'99년 결산율 (%)	
		1~11월말 징수액	12월이후 전망액	계	예상결산 율(%)			
총 계	120,380	99,776	21,340	121,116	100.6	114,637	108.0	
구 세	소 계	33,054	31,168	2,403	33,571	101.6	32,566	100.7
	재산세	7,532	7,696	6	7,702	102.3	7,276	104.4
	종합토지세	24,872	22,595	2,277	24,872	100.0	24,527	98.5
	과년도체납	650	877	120	997	153.4	763	157.0
시 세	소 계	87,326	68,608	18,937	87,545	100.3	82,071	111.3
	부동산취득세	26,625	14,190	7,410	21,600	81.1	26,276	144.7
	부동산등록세	43,229	38,510	11,190	49,700	115.0	39,654	96.0
	도시계획세	11,119	10,752	172	10,924	98.2	10,776	110.4
	공동시설세	5,043	4,282	4	4,286	85.0	4,094	100.7
	지역개발세	8	10	2	12	150.0	5	100.0
	과년도수입	1,302	864	159	1,023	78.6	1,266	135.1

## 2. 2001년 자치구 세입목표

(단위 : 백만원)

세 목	2001년 세입목표(A)	2000년 세입			B:A	C:A
		목표(B)	전망(C)	예상진도율 (%)B:C		
계	73,450	64,583	74,599	115.5	113.7	98.5
재산세	8,002	7,532	7,702	102.3	106.2	103.9
종합토지세	25,113	24,872	24,872	100.0	100.9	100.9
과년도수입	0	650	997	153.4	0	0
세 외 수입	40,335	31,529	41,028	130.1	127.9	98.3

### 3. 세목별 과징계획

#### □ 재 산 세 ----- 8,002백만원(6.2%증가)

- 과세대상 : 2001. 5. 1 현재 건축물
- 과세자료 조사 및 일제정비 : 2001. 2. 1 ~ 4. 30
- 납부기간 : 2001. 6. 16 ~ 6. 30

#### □ 종합토지세 ----- 25,113백만원(1.0%증가)

- 과세대상 : 관내 소재 모든 토지.
- 납부기간 : 2001. 10. 16 ~ 10. 31
- 종합토지세 대사 및 정비 : 2001. 5. 1 ~ 8. 10

#### □ 부동산취득세

- 자진신고 납부를 제고를 위해 취·등록세 납부안내문 발송
- 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 전수조사 : 연중 계속
- 미준공 사전 입주건물 조사 : 연중 계속
- 비과세·감면자 일제조사 : 연2회(상·하반기)
- 1가구 1주택 감면자 재산조회 : 연4회(분기별)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본점 사업용 부동산 조사 : 연중 계속

#### □ 부동산등록세

- 과세대상 : 재산권, 기타권리의 취득, 이전 등 변경사항을 등기·등록 하는 행위
- 『등록세 수납사항 사무처리부』 상 미납자 조사 : 연4회(분기별)
- 1가구1주택 비과세 감면자 조사 : 연4회(분기별)
- 비과세 감면물건 사후관리 : 연2회(상·하반기)
  - 용도구분 비과세, 임대주택 감면자 주차장감면 등

## 4. 법인 세무조사

### □ 추진방향

-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 및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하여 2인 1조팀 편성 현지방문 조사 탈루세원 발굴
- 비과세·감면 유보기간 경과 부동산 현장조사 강화

### □ 세부 추진계획

- 지방세 서면신고서 접수 : 2001. 5. 1 ~ 5. 15
- 부동산 취득법인·불성실 신고법인 실지조사 : 2001. 11.1 ~ 11. 30
- 세원발굴 중점 추진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조사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조사
  - 비과세, 감면 부동산 소유법인 조사
  - 신설, 지점설치 법인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대상법인 조사
  - 부동산 취득신고 납부과표 누락여부 확인

## 5. 세외수입 관리 강화

### □ 세입목표

구분	2001년 세입목표	2000. 11. 30 현재			비교
		목표액	징수액	징수율(%)	
계		34,298	42,588	124.2	
구수입	40,336	31,529	39,258	124.5	
시수입	시에서 배시	2,769	3,330	120.3	

### □ 중점추진계획

- 세외수입 징수대책 특별 보고회 개최(매월)
- 신규 및 탈루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 세외수입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사기양양책 강구

## 세 무 2 과

1. 2000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2. 2001년 자치구세 과징 계획
3. 실효성 있는 과징 계획
4.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 세무2과소관

## 1. 2000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목	2000년 세입목표	2000년도 세액징수전망				'99년 징수실적	'99년 결산율 (%)	
		1~11월말 징수액	12월이후 전망액	계	예상결산 율(%)			
총 계	143,454	145,564	16,947	162,511	113.3	128,017	100.3	
구 세	소 계	9,310	9,610	451	10,061	108.1	8,725	98.4
	면허세	1,837	1,613	39	1,652	89.9	1,845	100.9
	사업소세	7,389	7,907	406	8,313	112.5	6,813	88.0
	과년도수입	84	90	6	96	114.3	67	84.8
시 세	소 계	134,144	135,954	16,496	152,450	113.6	119,292	102.3
	차량취득세	3,166	2,748	234	2,982	94.2	2,383	117.5
	차량등록세	9,181	7,148	1,353	8,501	92.6	8,047	134.7
	자동차세	11,626	5,509	5,152	10,661	91.7	10,331	77.7
	주민세	101,500	112,542	8,446	120,988	119.2	91,513	98.3
	경주마권세	5,223	5,315	915	6,230	119.3	4,290	101.3
	과년도수입	3,448	2,692	396	3,088	89.6	2,728	84.6

## 2. 2001년 자치구세 과징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목	2001년 세입목표(A)	2000년 세입			A:B	A:C
		목표(B)	전망(C)	예상진도율 (%)B:C		
계	11,214	9,960	10,809	108.5	88.8	96.4
면허세	1,651	1,837	1,652	89.9	89.9	99.9
사업소세	8,793	7,389	8,313	112.5	119.0	105.8
과년도수입	770	734	844	115.0	104.9	109.6

### 3. 실효성 있는 과징계획

#### □ 구 세 ----- 10,444백만원

○ 면 허 세 : 1,651백만원, ○ 사업소세 : 8,793백만원

- 인·허가부서의 철저한 지도관리로 과세자료 탈루예방
- 사업장 폐지여부의 정확한 조사후 자료입력
- 세무서 자료활용하여 누락 사업장 사전방지
- 면허세 법령개정으로 부과제외 업종의 증가로 감소예상
- 사업소세는 2000년 목표대비 1,404백만원 증가예상

#### □ 시 세

○ 차량 취득·등록세

- 우리구에 신고납부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재정증대
- 비과세 및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과소 신고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탈루세원 추정

○ 자동차세

- 과세대상 : 납기가 있는 달(6, 12월말)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적용

○ 주민세

- 대 상 : 균등할·소득할·법인세할·특별징수
- 신고납부율 증대를 위한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세무서 통보자료에 의거 신고 납부유도 및 적기과세
- 송달방법

- 균등할(개인,사업장)은 관할통장이 직접 송달
- 소득할 및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고지서 송달 통장 격려

○ 경주마권세

- 과세대상 : 경마의 승마투표권 판매시 투표권발매가액의 10%
- 납부기간 : 다음달 10까지 신고 납부

## 4.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 지방세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현년도		과년도		
	총체납건수	총체납액	건 수	체납액	건 수	체납액	
지방세계	166,718	42,820	40,712	8,921	126,006	33,899	
시 세계	116,902	35,044	28,633	5,723	88,269	29,321	
시 세	부동산취득세	782	6,348	232	1,078	550	5,270
	부동산등록세	61	592	12	57	49	535
	도시계획세	15,025	1,761	5,201	533	9,824	1,228
	공동시설세	4,563	505	1,353	211	3,210	294
	지역개발세	38	1	35	0	3	1
	차량취득세	1,661	528	355	65	1,306	463
	차량등록세	195	118	14	1	181	117
	자동차세	47,795	6,877	5,111	638	42,684	6,239
	주민세	46,782	18,314	16,320	3,140	30,462	15,174
구 세계	49,816	7,776	12,079	3,198	37,737	4,578	
구 세	재산세	5,915	988	1,711	314	4,204	674
	종합토지세	9,738	5,842	3,824	2,703	5,914	3,139
	면허세	33,983	896	6,488	171	27,495	725
	사업소세	180	50	56	10	124	40

## □ 추진방향

- 체납관리팀 구성운영(12명)
-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능자, 징수불능자 원인 분석대처
- 체납자별 개별조치사항 강구
- 징수불능자 과감한 정리

## □ 세부추진계획

- 기간 : 2001. 1. 1 ~ 12. 31(년중실시)
- 체납고지서 일제송달 : 분기별 1회
  - 반송고지서 주소지 추적 후 재송달
- 세액 단계별 중점정리
  -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점정리
- 담당직원 징수책임자 확행
  - 직원별 배시, 주1회 징수복명
- 징수 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 재산 소유자 일부결손 병행실시
- 법인체납에 대한 특별관리
  - 법인소재지 추적 및 과점주주조사
- 과감한 공매의뢰 실시
  - 재산 소유자 중 납부기피자 및 납세능력 부족한 자
-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변호판 영치
  - PDA시스템 활용
-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체납징수활동 전개
- 납세 홍보활동 강화
  - 지역신문, 케이블TV 등 지역 언론매체 적극활용
  - 각종 행정제재 예고장 발송

## 지 적 과

1. 임야의 도시 지적화 사업
2. 지적도면 전산화 및 재작성
3. 위성측량(GPS)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망구축
4. 지적공부정리 결의서 전산화 사업
5. 표준지 공지사가 전산화일(영상화) 구축
6. 2000년 개별공지사가 조사 결정 및 관리

# 지적과소관

## 1. 임야의 도시 지적화 사업

### □ 사업개요

- 대상토지 : 312필지(국·공유지 210, 민유지 102)
- 추진내용
  - 임야도내의 토지가 대부분 등록전환 되어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에 대해 정밀도 등을 높이기 위해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여 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방법 :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

□ 소요예산 - 23,651천원(장비구입비13,200, 국공유지측량수수료10,451)

### □ 사업효과

- 지적공부의 정확성 제고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 국·공유지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및 행정능력 향상

## 2. 지적도면 전산화 및 재작성

### □ 사업개요

- 대 상 : 562매(지적도530, 임야도32)
- 추진내용
  - 보존상태가 불량한 지적(임야)도면의 재작성 및 전산화

### □ 사업효과

-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 및 공신력 제고
- 각종 정보화 사업 및 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구축 기반조성

### ※ 2000년 추진실적

- 서울시 및 행자부의 전산화계획과 연계추진 및 장비구입

### 3. 위성측량(GPS)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점 망구축

####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GPS에 의한 지적삼각보조점 구축 : 14점
  - 기준점 보호표식 설치 : 322점(황색 등 페인트로 중요시설물임을 부각)
- 방 법 : 우리구 및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조사설치

#### □ 사업효과

- 관내 기준점의 1등도선화를 통한 측량성과의 정밀도 제고
- 기준점 보호표식을 설치, 각종사업 등으로 인한 기준점 망실 사전예방
- 인위적 오차의 최소화를 통한 토지경계분쟁 사전방지

#### ※ 2000년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설치실적

-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 년2회(상.하반기)
  - 322점(지적삼각점 8, 지적삼각보조점 14, 도근점 300)
- 지적측량 기준점 재설치 : 도근점 18점(3,400천원)

### 4. 지적공부 정리결의서 전산화 사업

####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1. 1 ~ 2001. 12. 31
- 대 상 : 274권(지적공부정리결의서224, 측량결과도50)
  - ※ 지적공부정리결의서 1권 : 200매, 측량결과도1권 : 50매
- 추진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되었거나 새로운 내용의 토지 표시사항을 변경·등록을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 정리결의서 전산화
- 추진방법 : 기 확보된 장비(PC3대, 스캐너3대)활용 스캐닝작업  
측량결과도는 대형 입력장비 대여하여 추진

#### □ 소요예산 - 29,700천원(프로그램개발비)

#### □ 사업효과

- 정보화 기반구축 및 화재 등 유사시 적극적 대처
- 사무공간 활용의 극대화 및 지적공부의 자료관리 효율화

## 5. 표준지공시지가 전산화일(영상화) 구축

### □ 개 요

- 기 간 : 2001. 1. 3 ~ 2001. 8.31
- 대 상 : 1,942필지
- 추진내용
  - 표준지 필지별 토지특성·지리적 위치·주변환경 등을 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한 후 GIS 이용, 전산화일 구축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활용
- 추진방법 : 지가조사팀내 지가조사요원으로 조편성 추진

□ 소요예산 - 700천원(디지털카메라 구입비)

### □ 사업효과

-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기준정보 제공
- 지가공시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구현에 기여
- 공시지가 결정 및 조정 심의시 다양한 자료제시로 효율성 강화

## 6.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관리

### □ 개 요

- 대 상 : 54,000필지
- 추진기간 : 2001. 1. 3 ~ 12. 31
- 조사결정 기준일 : 년3회(1.1기준, 5.1기준, 9.1기준)

### □ 추진방법 및 내용

- 구 지가조사요원 및 감정평가사 합동조사.
-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주민의견 처리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년3회.

※ 2000년도 추진실적

(단위 : 필지)

구 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의견제출토지 처리			
		계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 각
2000. 1. 1기준	48,262	68	12	27	29
2000. 9. 1기준	446	7	3	1	3

# 당면주요업무

# 당면주요업무

## 1. 국·공유재산 변상금체납 일제정리

### □ 개 요

- 추진기간 : 2001. 1. 2 ~ 6. 30(6개월)
- 체납관리 및 정리반 편성 : 4개조 8명

### □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구유재산		국유재산		시유재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체납액	2,425	1,620	335	476	2,079	867	11	277

### □ 추진방향

- 체납 변상금의 부과 적정여부 조사 분석
- 체납자와 현점유자 대조확인 및 현장조사
- 측량 및 실태조사에 의거 부과취소 및 재부과
- 체납자별 개인 카드작성 지속 관리

### □ 일정별 세부추진 계획

- 2001. 1. 2 ~ 1. 31 : 체납부와 전산리스트 대조 확인 → 완료
- 2001. 2. 1 ~ 2. 28 : 개인별 체납카드 작성 및 주민등록번호 조회
- 2001. 3. 1 ~ 3. 31 : 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예고
- 2001. 4. 1 ~ 4. 20 : 이의신청 접수에 대한 현장조사, 측량 실시
- 2001. 4. 21 ~ 5. 31 : 압류대상자 선정
- 2001. 6. 1 ~ 6. 15 : 재산압류 및 징수불능자에 대한 대책강구
- 2001. 6. 15 ~ 6. 30 : 측량결과에 의거 부과취소 및 재부과

## 2. 청렴계약제 도입

### □ 추진개요

- 대상사업 : 수의계약을 포함 모든 세출사업
- 시행일자 : 2001. 1. 16
- 서약대상 : 발주부서(최종 결재권자), 회계부서(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 주요내용 : 행정기관과 업체간에 금품·향응를 주고 받지 않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상호교환

※ 일정기간 실시후 업체의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개선대책 강구

### □ 위반시 처벌내용

- 입찰참가 자격 제한 : 1 ~ 2년
  - 경쟁입찰시 담합, 계약관련 금품·향응등 제공
- 입찰참가 불허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거부시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 과징금 부과
- 계약전 →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후 → 계약해지

## 3. 시민만족도평가 세무행정분야 종합대책 추진

### □ 목 표 : 시민만족도 평가 세무행정분야 최우수구

### □ 추진계획

- 긴급개선 분야 - 신청과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입수 등
  - Re - call제 강화 : 민원처리 익일 전화점검
  - “민원안내 도우미” 고정배치 : 2001. 1 ~ 계속실시
  - 민원인 쉼터 설치 : 민원상담석, 인터넷 정보방, 음료대 등 설치
  - 지방세 홈페이지 수록내용의 신속한 자료정비
- 개선권장 분야 - 담당공무원의 법규지식 보유정도 등
  - 외부기관 위탁 친절교육 실시 : 20명 (간부포함)
  - 이달의 친절왕 선발 지속실시 : 종로구 로고뺏지 지급
  - 고지서 택배지 시행 : 정기분 고지서 관내분을 통장이 직접송달
  - 시민만족도평가 추진반 구성 :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추진 등

## 4.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 □ 추진개요

- 단 속 기 간 : 2001. 2. 19 ~ 2. 23
- 대 상 업 소 : 485개업소 (공인중개사 191, 중개인 285, 법인 9)
- 단속반 편성 : 3개반 6개조(2인 1개조)
  - ※ 관내를 5개권역으로 구분, 단속반 편성
- 단 속 내 용
  - 부동산 위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제보된 업소
  - 전세가격 상승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및 수령행위 등 관련법령 위법행위

### □ 단속결과 조치

-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등 행정처분

### □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관련 조치사항

- 각종 홍보물 배부 : 2001. 1. 8 ~ 1.12
  - 대 상 : 전부서, 각동, 부동산중개업소
  - 배부물 : 10,120매(수수료요율표 538, 신고엽서 1,501, 안내전단 8,081)
-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안내문 발송 : 485개업소
- 홍 보 : 지역신문, 종로사랑지, 인터넷사이트 등
- 부동산중개업소 위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 구 및 각동
- 설명회 개최 : 2001. 2. 2(부동산중개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 5. 개별공시지가 조사

###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01. 1. 2 ~ 8. 29
- 대 상 : 48,320필지(사유지 39,142 국·공유지 9,178)
- 방 법 : 상시 지가조사반 편성운영 및 추진

### □ 일정별 주요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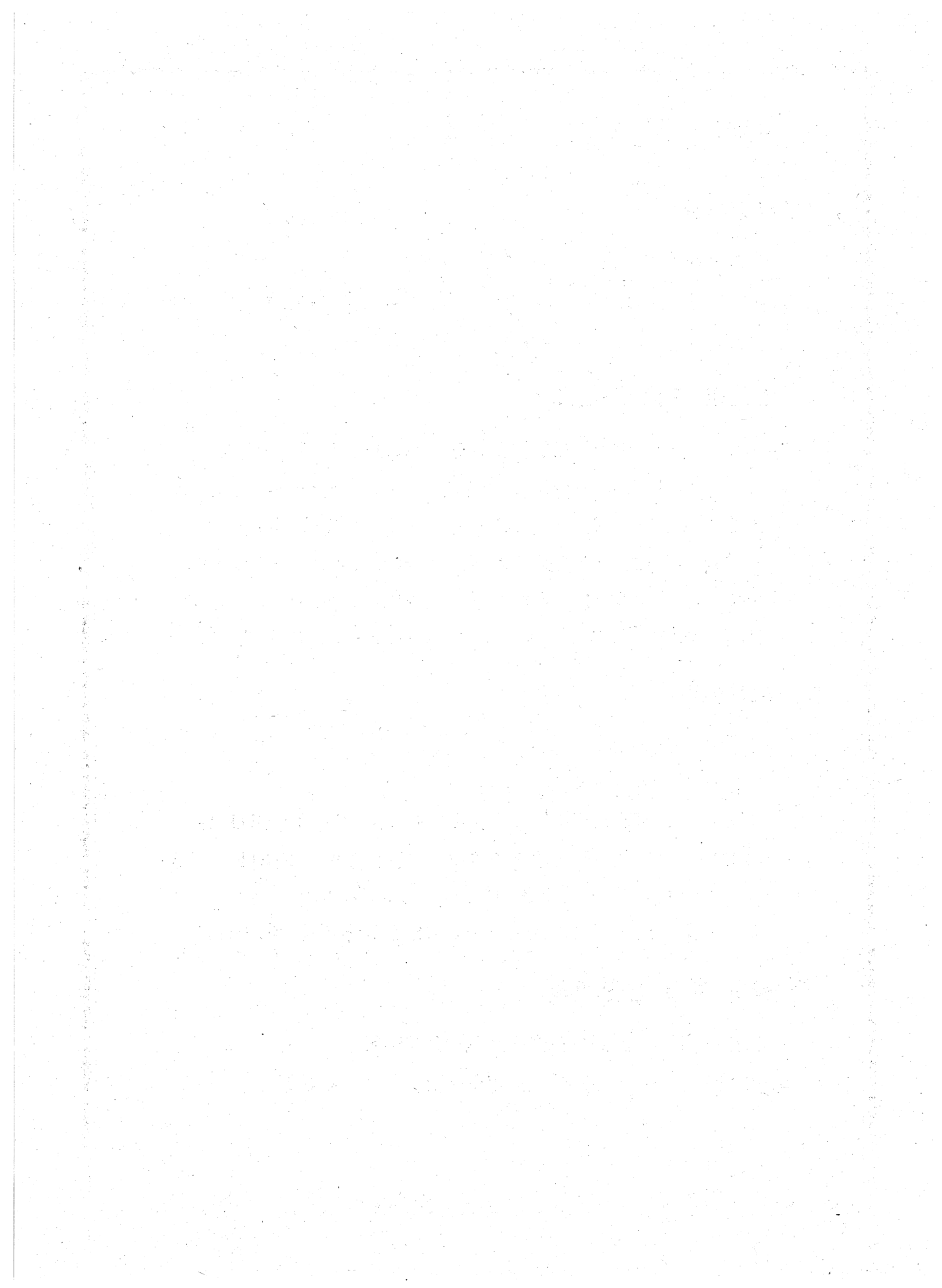
-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 : 2001. 1. 2 ~ 2.28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 2001. 3. 2 ~ 4.30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 2001. 5. 2 ~ 5.21
-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과통지 : 2001. 5.29 ~ 6.11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01. 6.30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01. 6.30 ~ 8.29

### □ 추진실적

- 지가조사요원 교육 : 2001. 1. 4
  - 참 석 : 지가조사요원 10명
  - 내 용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등
- 200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조사 관련 홍보 : 2001. 1. 8
  - 종로사랑지 및 지역신문, 반상회보지 등에 게재
- 토지특성 조사 : 22,000필지(총 48,320필지중 45.5%)

### □ 향후 주요 추진계획

-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 (2.28한)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3. 2 ~ 4.30)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 건설

— 2001年度 —

# 主要業務推進計劃



## 都市管理局

# 목 차

□ 일 반 현 황

□ 주 택 과

□ 도 시 계 획 과

□ 건 축 과

□ 공 원 녹 지 과

# 一 般 現 況

## 1. 도시관리국 기구 : 4과 15개 업무팀

### □ 주택과 (4개 업무팀)

- 주택행정의 종합 및 민영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시민아파트 관리
- 무허가건물의 발생방지 및 철거에 관한 업무등

### □ 도시계획과 (4개 업무팀)

-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등

### □ 건축과 (4개 업무팀)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설 위험시설물 관리 및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등

### □ 공원녹지과 (3개 업무팀)

-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국립공원 및 그린벨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등

## 2. 직원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기 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청경	고용
계	138	95	1	4	17	32	36	5	29	11	3
주 택 과	43	33	1	1	5	14	12	-	9		1
도시계획과	29	24	-	1	5	6	11	1	3		2
건 축 과	22	22	-	1	4	8	8	1	-	-	
공원녹지과	44	16	-	1	3	4	5	3	17	11	

# 주 택 과

## 〈 추진 방향 〉

- 불량 주거지역 —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사업 적극추진
- 시민아파트관리 — 노후아파트정리, 재난예방 만전
- 전세입자 전·월세 보증금대출 — 주민 생계 안정도모
- 무허가건물관리 — 전산화로 민원신속처리, 행정능률제고

### 1.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 □ 지구현황 : 16개지구

- 공공시설 완료지구 - 7개지구  
(신교, 가회, 홍파, 창신2, 명륜1, 명륜2, 명륜3)
- 공공시설 진행지구 - 9개지구  
(창신, 송인, 행촌, 누상·옥인, 원서, 사직, 연건, 누상1, 동송)

#### ※ 신규지정 추진 - 1개지구

- 지구명 : 창신3 주거환경개선지구
- 위치 : 창신2동 610,23번지일대(면적 2,789.7㎡)
- 기존건물 : 26동(40세대)
- 도시계획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 □ 추진계획

**【2000년 이월사업】** — 10개소, 23억24백만원(시비1,954, 구비370)

도로개설 : 5개소, 1,009m, 1,458백만원	공공시설 : 5개소, 866백만원
- 창신지구(5차) : B=4~6m, L=264m	- 창신지구 어린이집 : 지하1층, 지상2층
- 원서지구(4차) : B=4m, L=80m	- 연건지구 마을회관 : 지상2층
- 원서지구(5차) : B=4m, L=70m	- 동송지구 경로당 : 지상2층
- 누상옥인(4차) : B=4m, L=255m	- 창신지구 어린이놀이터 : 799.4㎡
- 누상1지구(1차) : B=4m, L=340m	- 행촌지구 건물철거 : 기존건물 13개동

**【2001년 신규사업】 — 7개소, 12억 31백만원(시비)**

<b>도로개설 : 4개소, 615m, 795백만원</b>	<b>공공시설 : 3개소, 436백만원</b>
- 송인지구(4차) : B=6m, L= 70m - 행촌지구(5차) : B=4m, L=150m - 원서지구(6차) : B=4m, L=370m - 사직지구(2차) : B=4m, L= 25m	- 행촌지구 주차장 (277㎡) - 원서지구 마을회관 (121.6㎡) - 창신지구 경로당 (197㎡)

**2.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조합명	위치	면적 (㎡)	조합원수	건축계획	추진사항
창신·창림(아)	창신동23-816외2필지	4,589	40	지하2층 지상10~19층	2002.12월입주 (1개동113세대)
평창동북악맨션	평창동72외2필지	8,263	60	지하2층 지상12~14층	2002.4월입주 (3개동156세대)
평창그린빌리지	평창동45	11,312	52	지하2층 지상5층	'98.2.20 조합설립 2001.1.22 주택 사업변경인가신청 (95세대)
무악연립재건축	무악동59-1외110필지	41,423	448	지하2층 지상15~17층	2004.10월입주 (17개동1,054세대)

**3. 노후 시민아파트 정리**

□ 현 황

구분	위치	부지면적	건물동수	호수	가구수				비고
					계	건물주	세입자	무단개발	
청운시민	청운동산4-25일대	19,285㎡	11개동	577호	991	577	404	11	7층 11평
창신 삼일시민	창신동 400-4일대	6,060.3㎡	6개동 (1~6동)	410호	714	410	304		7층 11평
송인 삼일시민	송인동 1435일대	4,810㎡	6개동 (7~12동)	404호	617	404	200	13	”

### □ 추진계획

#### ① 청운시민아파트 —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으로 전환 정리추진

- 총대상 991세대중 835세대 보상완료(84%)
- 철거정리업체 배치(2000.11.30) : 태동건설(주),유창중건설
- 청운지구아파트 철거부지 도시계획시설(안)공람공고실시  
(2000.12.30~2001.1.13)
- 청운지구아파트 철거부지 도시계획시설 공고
- 보상 미협의세대 보상협의촉구 및 이주독려실시(156세대)
- 보상협의후 미이주 잔류세대 동별 행정대집행(44세대)

#### ② 창신삼일시민아파트 — 주민자체 재개발 추진

- 창신지구 재개발 제6-2지구 해제, 제6-1지구 재개발추진
  - ※ 창신 제6-2지구 건물주 재개발 반대, 재개발 해제동의서 징구중
- 추진위원회에서 지구분할(6-1지구)사업계획신청시 행정지원 및  
서울시에 사업계획서 상정

#### ③ 승인삼일시민아파트 — 주민자체철거동의 정리추진

- 1·2층 상가점포제외, 3~7층 정리방안추진(서울시방침 시달시)
  - ※ 1,2층 점포주는 자체철거동의 반대, 3~7층 주거층 주민은 주민자체  
철거정리에 동의(설문조사실시 예정)

○ 상가 및 주거 호수 : 404호 (1,2층 상가 114, 3~7층 주거층290)  
 ※ 3~7주거층 : 가옥주 290(거주121,비거주169), 세입자200,무단개발13

## 4. 시민아파트 보수·보강 공사

### □ 현 황

- 대 상 : 청운시민아파트(11개동), 삼일시민아파트(12개동)
- 기 간 : 분기별 1회, 필요 및 긴급시 수시실시

○ 추진사항

- 서울시 안전진단기관의 분기별 안전점검 및 계측점검결과 적출된 주요 구조부 위험요소 정비(분기별)
- 순찰시 적출된 안전위해요소 보수·보강
- 주민신고사항 현장확인 보수조치(우선 즉시조치후 사후정산)  
(예) H밤가동보강, 콘크리트탈락부위 에폭시충진 및 보수, 난간 계단보수등

□ 소요예산 : 1억원(시비-특별회계)

※ 소요예산 부족시 보수비 추가배정요구

5. 저소득 세입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출개요

- 대출재원 : 국민주택기금 1,060백만원
- 대출한도액 : 가구당 100~1,000만원 이하(연리3%)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대출대상자
  - 1년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된 무주택 세대주
  - 전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 세입자(대출금 포함)
- ※ 배기량 1,500cc 이상 승용차·부동산소유자, 영구·국민임대주택입주자 제외
-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대출실행 : 한국주택은행(관내거주지 각지점에 대출신청)
- 대출신청장소 : 이사할(예정)동사무소, 구청 주택과

□ 추진사항

- 대출신청자 적격여부 실태조사 철저실시 (부당대출 방지)
  - 전산조회(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지적과, 구 교통행정과)

대출접수시기	대출횟수
매월 1~3일 (긴급시,수시)	매월 1회

※ 2000대출실적 : 110건, 10억2천50만원 (대출제원 14억원)

## 6.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및 기존무허가건물 전산화

### □ 무허가 건물 신발생 사전예방단속

- 유관부서(6)와 연계 합동단속실시
  - 건축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 통반장 및 직능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로 신발생 초기적출 단속
- 인력의 탄력적 운용 (항공사진 판독현장조사팀 → 기동순찰조로 변환)

### □ 주민신고 제도 활성화

- 주민신고 엽서를 통한 주민신고제도 활성화
- 주민신고 엽서 비치 확대
- 반상화등 각종 회의를 통한 신고제 적극홍보

### □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팀 구성 운영

- 현장조사 동 담당제 운영인원 : 8명

계	행정6급	행정7급	행정8급	기능(고용)직	비 고
8	1	1	3	3	

- 주요추진 업무

- 동 담당별 이행강제금 (건축과태료)부과 및 체납관리
- 동 담당별 민원처리

※ 필요시 신발생단속 기동순찰대로 전환 탄력적 운영

### □ 기존 무허가건물 관련업무 전산화 및 민원업무처리

- 대 상 : 1,709동
- 전산 입력완료 : 2001. 1월
- 전산망 운영시기 : 2001. 2월중

구 분	추진사항	비 고
증명서 발급	전산망을 통한 동사무소 처리	
증명서 발급을 제외한 각종 민원처리	구청에서 처리	
민원신고접수 중계처리	각종 민원신고서 민원창구에서 접수, 구청에서 중계처리	

## 도시계획과

### 〈 추진 방향 〉

#### 《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촉진 》

##### □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

- 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 자연경관지구 철저관리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 지구단위계획 확정

##### □ 재개발사업의 적극 추진

- 도심·주택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지원

#### 《 국제적 문화도시 기반조성 》

#####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시범가로)

- 인사동길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 돈화문길 옥외광고물 정비
- 대학로 시범가로 지정 정비

##### □ 불법광고물 근절

- 불법광고물 철거 정비, 옥외광고물 양성화

##### □ 광고물관리의 효율적방안 강구

- 현수막게시대 확충, 벽보제거기 확보 구입

## 1.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

### □ 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 대 상 : 일반주거지역(6.759km<sup>2</sup>)  
→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기 간 : 2001. 1 ~ 2003. 6
- 방 법 : 전문기관용역시행
- 소요예산 : 약 1억(시비)

### □ 자연경관지구 관리철저

- 대 상 : 관내 경관지구 2.99km<sup>2</sup>(평창·인왕·성북지구)
- 내 용 : 해제 또는 규제완화
- 기 간 : 2001. 1. ~ 2001. 6.
- 추진방법
  - 지구별·동별·블럭별 대지현황 조사  
(토지면적, 건물현황, 주변지역 현황등)
  - 법규 및 시관리계획의 부합여부 검토하여 해제대상지 선정
  -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행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 대 상 : 도시계획결정 10년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 104개소 - 140,000m<sup>2</sup>>
- 기 간 : 2001. 1 ~ 2001. 12
- 내 용 : 시설해제 또는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 관리시설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자동차정류장, 배수지등

□ 지구단위계획 확정

〈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

- 위 치 : 창신, 송인동 일대
- 면 적 : 590,000 $m^2$
- 기 간 : 1996. 10. ~ 2001. 8.
- 주요내용
  - 구역축소 : 590,000 $m^2$  → 270,660 $m^2$  (감319,340 $m^2$ )
  - 용도지역 조정 : 왕산로 복단
    - 당초 : 일반상업지역(B=12m), 일반주거지역(B=23m)
    - 변경 : 일반주거 → 준 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특별설계구역추진 ; 궁안마을(A=8,838.86 $m^2$ )
  - 주민 요구안 반영 적극 추진
- 사 업 비 : 45,000천원(구비)

〈 경복궁 지구단위계획구역 〉

- 위 치 : 내자동 일대
- 면 적 : 37,290 $m^2$
- 기 간 : 1996. 10. ~ 2001. 8.
- 주요내용
  - 구역축소 : 당초135,200 $m^2$  → 37,290 $m^2$ (현재)
  - 적선블럭 해제(24,910 $m^2$ )
  - 내자블럭 : 주민발의에 의한 개발계획수립 추진(12,380 $m^2$ )
- 사 업 비 : 비예산

## 2. 재개발 사업의 적극 추진

### □ 도심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지원

#### ○ 도심재개발사업추진안내 및 홍보 적극 실시

- 내 용 : 법령개정, 지침등 소개
- 방 법 : 리후렛, 지역신문, 상담등
- 기 간 : 2001. 1. ~ 20012. 12

#### ○ 추진중인 구역 행정지원

- 대 상 : 13개지구
  - 내수구역 (제1, 제2, 제3, 제4) — 4개지구
  - 도림구역 (제15, 제19, 제21) — 3개지구
  - 신문로구역(제1, 제3, 제8) — 3개지구
  - 사직1구역, 청진6지구, 익선구역 — 3개지구
- 내 용 : 공정관리, 조합설립, 사업계획승인, 구역지정등
- 기 간 : 2001. 1. ~ 2001. 12

#### ○ 도심재개발사업 공사장 안전 및 기존 건축물 점검

##### < 안 전 점 검 >

- 대 상 : 40개소  
(공사장6, 대형건축물23, 중점관리6, 재난관리5)
- 기 간 : 2001. 1. ~ 2001. 12.
- 방 법 : 월별, 분기별 상설점검

##### < 건축물 점검 >

- 대 상 : 48동  
(10,000 $m^2$ 이상33개소, 2,000~10,000 $m^2$ 15개소)
- 기 간 : 2001. 4. ~ 2001. 6.
- 방 법 : 특별합동점검

□ 주택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지원

- 대 상 : 3개구역
  - 신영제1구역, 송인제4구역, 삼청제2구역
- 내 용 : 행정절차 지원

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등

- 기 간 : 2001. 1. ~ 2001. 12.
- ※ 옥인 47, 창신 제6지구(6-1,6-2)에 대하여도 지속추진

3.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시범가로)

□ 인사동길 사후관리 철저('99시범가로)

- 대 상 : L=575m
- 광고물수 : 836개 (존치:589개, 정비:247개)
- 추진사항 : 정비광고물에 대한 주1회 순찰철저로 현수준 유지

□ 돈화문길 옥외광고물 정비

- 대 상 : L=990m
- 광고물수 : 1,016개 (존치:520개, 정비:496개)
- 추진사항 : 자율정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돈화문로  
걸고싶은거리 조성사업과 연계시행  
(2000년 실적 : 245개)

□ 대학로 시범가로지정 및 정비

- 대 상 : L=1,200m
- 추진사항 : 시범가로지정 추진건물, 업소, 광고물 수량조사  
시범건물 지정정비
- 추진팀 별도구성 운영

#### 4.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 □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 대 상 : 4,756개(2000년 1,000개)
- 2001년 계획 : 1,500개
-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확보로 적극추진(2003년 완료)

##### □ 옥외광고물 양성화

- 대 상 : 5,186개 (2000실적 : 596개)
- 신고기간 연장실시 : 2001. 1. 20 ~ 2001.2.28

#### 5. 광고물 관리의 효율적방안 강구

##### □ 현수막 게시대 확충 정비

- 기 존 : 2개소
- 확 충 : 20개소 (1차:9개소, 2차:11개소)

##### □ 벽보제거기 구입

- 기존보유 : 1대
- 추가구입 : 2대
- 대학로 및 종로 집중실시

##### □ 문화게시판 증설

- 기 존 : 23개소
- 증 설 : 53개소(계 76개소)
- 벽보수요 충족 (민자유치)

# 건축과

## 〈 추진 방향 〉

- 친절봉사 확립 — 고객만족의 서비스제공, 투명한 건축행정구현
- 위법건축물관리 — 위법건축물 사전예방, 준법질서확립
- 시설물 안전관리 — 재해 사전예방,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구축
- 조화로운 도시정비 — 명소길은 아름다운 종로건설
- 공공건축물 건립 — 기능,미관이 조화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조성

### 1. 친절봉사 행정확립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과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 건축 행정서비스 현장제 운영

- 시행내용 : 서비스 이행표준 실천
  - 전화친절히 받기
  - 전화친절히 받기
  - 민원처리기간 단축
  - 원-스톱 민원처리
  - 친절한 상담실 운영
  - 전화 리콜제 실시
  - 민원예약제 실시
  - 보상제실시
  - 신고사항등 공무원 직접 작성처리
- 시행시기 : 연중 지속시행

#### □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 대상업무
  - 민원관리 ————— 민원접수, 조회, 회신 등
  - 건축 인·허가 ————— 건축심의,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 통계 및 단체관리 — 허가·착공 통계 및 건축사관리 등
- 처리내용 : 건축민원은 CD, 디스켓으로 접수처리
- 처리기간 : 2001. 1. 1. ~ 12. 31

## 2. 위법건축물 관리

건축물의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 중·대형 건축물 점검

- 점검대상 : 305건 (연면적 2,000㎡이상)
- 점검내용 :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물 유지관리상태
- 점검시기 : 연1회(2001. 3~6월)

### □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

- 점검대상 : 연면적 2,000㎡이하의 착공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
- 점검내용 : 면적증가,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건축행위
- 점검시기 : 분기별 자치구간 교차점검

### □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점검

- 점검대상 : '82~'99년도 건축허가분 중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 181동
- 점검내용 : 위법시정여부, 시정독려
- 점검시기 : 연2회(반기별 점검)

### 3. 시설물 안전관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상시설물을 적기 점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하고자 함

#### □ 1·2종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55동
- 점검내용 : 건축시설 안전관리 상태
- 점검시기 : 연2회(반기별 점검)

#### □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147개소(재난위험시설물 3개소, 중점관리대상 144개소)
- 점검내용 : 안전성 점검 및 위해요소 시정 독려
- 점검시기 : 재난시설 월1회, 중점관리대상 연2회(반기별 점검)

#### □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대형공사장 11개소(지하 10m이상 굴토 및 연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장)
- 점검내용 : 안전성 점검 및 위해요소 시정 독려
- 점검시기 : 연5회(설날,해빙기,우기,추석,동절기 대비)

#### 4. 조화로운 도시 정비

문화적 명소 보존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설계용역 시행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사업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서울시 용역시행)

- 용역대상 : 인사동 일대 122,200 $m^2$ (36,965평)
- 용역기간 : 2000. 6~2001.10
- 용역자 : 시정개발연구원, (주) 쌍용엔지니어링
- 우리구 시행
  -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상설위원회 월1회 개최
  - 용역 완료시 용역 목적에 부합된 사업시행

##### □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시행(서울시 용역시행)

- 용역대상 : 가회동 일대 645,000 $m^2$ (195,454평)
- 용역기간 : 2000.12~2001.12
- 용역자 : 시정개발연구원, (주) 하우드 엔지니어링
- 예산확보 : 총예산 844억원중 2001년예산 142억원
- 우리구 시행
  -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상설위원회 월1회 개최
  - 한옥 소유 주민이 등록한 한옥은 개·보수비 지원 또는 매입 등으로 주민의 자율적 보존 유도
  - 앞으로 업무분담에 다른 한옥 개보수 감독 및 주거 환경 정비사업추진

### 5. 공공 건축물 건립

주변과 조화된 쾌적하고 미려한 공공건물 건축을 위한 완벽한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고자 함

#### □ 건축물의 기능과 미관이 고려된 설계

- 주변과의 조화 및 미관을 고려한 미려한 건축계획
- 설계시 실내 인테리어설계 병행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색채계획, 조명계획, Signage계획 등 종합계획 수립)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에 대한 충분한 반영
- 건축물 마감재료 선정시 전문가 참여

#### □ 건축물 시공시 철저한 안전관리 및 품질확보

-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확행
-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착공시 품질시험계획 사전수립

#### □ 2001년 공공 건축물 건립계획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개요	
	공사규모	예정공사비		공사규모	공사비
종로5,6가 동청사 신축	지하1층,지상4층 1,650㎡	20억원	명륜1가공영 주차장 신축	지상2층 1,802㎡	9.1억원
교남동 청사 신축	지하1층,지상4층 1,650㎡	20억원	동묘공원화장실 개축공사	지상1층 50.4㎡	1.2억원
이화동 청사 신축	지하1층,지상4층 1,650㎡	20억원	삼청공원화장실 개축공사	지상1층 81.20㎡	1.5억원

## 공 원 녹 지 과

### 〈 추 진 방 향 〉

- 공원 수준 향상 - 편리한공원, 쾌적한공원, 친근한공원
- 도심녹지량확충 - 꽃과 나무와 쉼터가 있는 종로
- 산림복원 및 보전 - 다시 찾고 싶은 인왕·북악산길

### 1.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 사업계획

- 보상 및 철거 : 아파트30동/ 단독주택 237동
- 공원조성 : 역사탐방로, 조각정원, 운동시설 등
- 사업비 : 800억원(보상: 656억원, 공사 : 144억원)

#### □ 추진실적

- 아파트 : 30동 철거완료
- 단독주택 : 140동 보상완료
- 집행예산 : 559억원(보상 479억원 / 조성80억원)

#### □ 2001년 추진계획

- 단독주택 : 123동 보상 및 철거 예정
- 소요예산 : 88억원(2000년 이월 예산)
- ※ 공원조성 : 2002. 6월 완공(서울시 녹지관리사업소)

### 2. 종묘옆 근린공원 조성사업

- 위치 : 권농동 100번지 일대(2,638㎡)
- 사업내용 : 건물6동, 토지보상 505.7㎡ 및 마을마당 조성
- 소요예산 : 10억(2000년 예산)
- 향후계획 : 2001 ~ 2003년 년차별 추진(총소요액 50억)

### 3. 자매결연지 기념공원 조성

- 위 치 : 무악동77번지일대(3,700㎡)  
(현대아파트 가이주단지 철거부지)
- 사업내용 : 기념물설치 및 기념식수 공간(4개소),
- 소요예산 : 2억5천만원(구비)

### 4. 공원내 공중화장실 청결상태 개선

- 대 상 : 14개소(완료 8개소, 개선중 6개소)
- 사업내용
  - 증·개축 : 동묘, 삼청1호(공사중), 삼청공원2호(발주예정)
  - 대 수 선 : 지붕골, 씌지(공사중), 사직공원2호(발주예정)
- 소요예산 : 3억3천만원(시비)
  - 동묘,지붕골,씌지 : 1억7천만원 / 삼청,사직2호 : 1억6천만원

### 5. 종묘광장 시설장비

- 사업내용 : 잔디보호휀스, 편의시설 교체 및 증설
- 소요예산 : 2억3천1백만원(시비)

### 6. 근린공원 유지 보수

- 대 상 : 6개 공원
  - 탑골, 마로니에, 동묘, 송인, 연지, 창덕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수목보식, 상하수도 설치, 공원등 신설등
- 소요예산 : 1억5천만원(구비)

## 7. 도심가로변 꽃묘 식재

- 식재대상 : 꽃밭 9개소, 교통안전지대 3개소, 화분대 6개소  
- 종로, 율곡로, 대학로, 청와로, 창경궁로, 인사동길
- 식재수량 : 팬지등 15종 560,000본(3월~11월)
- 소요예산 : 2억2천4백만원(구·시비)

## 8. 어린이공원 현대화

- 대 상 : 2개소(명륜어린이공원, 무악어린이공원)
- 사업내용 : 조합 놀이대, 파고라, 허리돌리기 설치등
- 사업비 : 1억6천5백만원(구·시비)

## 9. 시유공원 정비(면적10만㎡이상)

- 위 치 : 와룡, 인왕산, 삼청, 사직근린공원
- 사업내용 : 공원등신설, 산책로 및 휠스정비, 약수터 주변정비, 소나무 수세회복등
- 사업비 : 5억원(시비)

## 10. 인왕·북악산 주변정비 사업

- 위 치 : 사직근린공원~ 북악팔각정
- 사업내용 : 인왕·북악산길주변 휠스정비(30억원), 도시환경림조성(1억원)
- 사업비 : 31억원(시비)

제108회 임시회  
2001. 2. 7.  
재무건설위원회

# 2001년 주요업무계획

아름다운 종로 건설



## 건설교통국

# 보고 순서

□ 일반 현황

□ 2001년 주요업무 보고

○ 건설 관리 과

○ 토 목 과

○ 교통 행정 과

○ 교통 지도 과

# 일 반 현 황

## 1. 직원 및 행정장비 현황

□ 직 원

2001. 1. 31현재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가능직	전문	방법원	비 고
계	정 원	163	1	4	15	23	26	14	78	2		
	현 원	240	1	4	22	29	30	8	72	2	72	상용 25 일용 18 공의 111
	과부족	+77			+7	+6	+4	-6	-6		+72	
건설관리과	정 원	38	1	1	4	6	5	3	18			
	현 원	40	1	1	6	7	7		15		3	상용 1 일용 18 공의 3
	과부족	+2			+2	+1	+2	-3	-3		+3	
토 목 과	정 원	48		1	5	8	12	3	19			
	현 원	50		1	6	10	11	7	15			상용 24 공의 1
	과부족	+2			+1	+2	-1	+4	-4			
교통행정과	정 원	21		1	3	4	5	3	3	2		
	현 원	24		1	4	6	7		4	2		공의 5
	과부족	+3			+1	+2	+2	-3	+1			
교통지도과	정 원	56		1	3	5	4	5	38			
	현 원	126		1	6	6	5	1	38		69	공의 102
	과부족	+70			+3	+1	+1	-4			+69	

□ 행정장비

구	분	전 자 복 사 기	컴 퓨 터	팩 시 밀 리	카 메 라	기 타
건설관리과	대	1	29	1	4	○ 비디오카메라 2대 ○ 교압세정기 1대
토 목 과	대	1	36	1	1	○ 제설기 10대 ○ 콘베아벨트 2대 ○ 준설기 8대
교통행정과	대	3	25	1	1	
교통지도과	대	3	64	3	디지털 40 비디오 24 일반카메라 10	○ 견인차량 1대 ○ 단속차량 3대 ○ 스마트폰 23대

## 2. 과별 소관업무 현황

과 명	담당명	관 장 업 무
건설관리과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용지(도로, 하천·구거)의 점·사용허가</li> <li>○ 전문건설업·건설기계에 관한 사무</li> <li>○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과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용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li> <li>○ 광고물 점용료 부과 징수</li> <li>○ 무단·불법점용자 변상금 및 과태료 징수</li> </ul>
	보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용지의 취득보상</li> </ul>
	가로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순찰 확인 및 가로적치물 제거</li> <li>○ 도로일시점용 허가</li> </ul>
토 목 과	토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 및 집행</li> <li>○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li> <li>○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도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및 보도 시설물 유지관리</li> <li>○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li> <li>○ 지하도, 지하광장, 터미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li> </ul>
	조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지하보·차도,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관리</li> </ul>
	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행정 종합조정지도</li> <li>○ 하천시설 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li> </ul>
	지 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도 사용료 체납징수</li> <li>○ 지하수 개발, 이용, 변경, 중지 허가(신고) 접수처리</li> <li>○ 배수펌프장 운영관리</li> </ul>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종합대책</li> <li>○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li> <li>○ 운수업체 부대시설 인가</li> </ul>
	교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소통 개선사업</li> <li>○ 교통표지판 설치 관리</li> <li>○ 공영, 노상주차장 설치</li> </ul>
	자동차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신규등록</li> <li>○ 자동차 이전등록</li> <li>○ 자동차 구조변경</li> </ul>
교통지도과	주차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주·정차단속 관련 업무</li> <li>○ 주차장(노외,부설) 관리업무</li> <li>○ 무단방치차량 처리</li> </ul>
	운수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과태료 부과</li> <li>○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li> <li>○ 자동차 정비, 매매업소 업무</li> </ul>
	주차과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위반 과태료 조정 및 징수결의</li> <li>○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및 징수업무</li> <li>○ 민원접수 및 과태료 고지서 발급</li> </ul>

### 3. 주요현황(2001. 1. 31현재)

도로현황

연 장	도 로 율	포 장 율	면 적
266,120km	21.47%	99.24%	2,584,298m <sup>2</sup>

하수도 보급현황

합 계	전 체 면 적(km)					하수도 보급면적(km)		
	기 개발 지		개 발 확정지	개 발 가능지	개 발 불능지	하수관거 필요면적	하수관거 시설면적	보급율 (%)
	관 거 보급지	관 거 미보급지						
23.92	14.11	-	-	0.27	9.54	14.11	14.11	100

운송업체 현황

총 계	시내버스	마을버스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개인택시	비 고
341	0	8	6	14	313	

□ 자동차등록 현황

구 분	계	승용차	버스(승합)	화물	특수	비고
합계	50,413	36,306	7,506	6,577	84	
관용	3,039	1,727	865	421	26	
자가용	45,614	33,826	6,030	5,734	24	
영업용	1,820	753	611	422	34	

□ 주차시설 현황

구 분	총계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소계	노상	노외	거주자	소계	부설	노외
개소	3,955	86	20	5	61	3,869	3,721	148
구획수	49,991	2,403	486	64	1,853	47,588	41,440	6,148
면적(m <sup>2</sup> )	6,110,166	28,894	6,142	1,443	21,309	582,272	443,786	138,486

2001년  
주요업무계획

건설관리과

##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 국·공유재산관리 내실화

- 내 용 : 국·공유재산(도로,구거,하천)의 유지·보존등 재산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대 상 : 9,506필지 2,485천 $m^2$
- 추진계획
  - 공공용지 관리실태 전수조사 및 미정리된 공부정리
  - 무단점용 추정지역 정밀조사 및 현황측량
  - 공공용으로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용도폐지
  - 공공용지 점유자 발굴 및 점용료 부과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

### □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체계 확립

- 내 용 : 탈루세원 방지 및 신규세원을 확보하고 세외수입 징수체계 확립
- 세입목표 : 45,775 $m^2$  4,180백만원
- 추진계획
  - 허가분 정기부과와 무허가분 변상금 부과로 구분 징수
  - 정밀조사로 신규세원 발굴
  -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납부독려로 징수실적 거양

□ 보상업무의 전산화

- 내 용 : 보상업무 전산화를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 대 상 : 203개 사업장 8,533건
  - 1975년 ~ 2000년까지 보상현황
- 추진계획
  - 보상정보시스템 구축한 우수업체를 선정 용역계약 체결
  - 보상물건조사서, 감정평가자료, 협의상황자료 등 입력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 내 용 : 설명회 및 이해설득으로 보상협의율을 제고하여 조기보상 완료

사 업 장 수									사업비(백만원)		
계	시 사 업				구 사 업				계	사비	구비
	소계	계속	이월	신규	소계	계속	이월	신규			
12	2		2		10		5	5	9,360	6,000	3,360

- 추진계획
  - 보상기간 최대한 단축 : 6개월 → 4~5개월
  - 보상협의율 제고 : 70~80% → 90% 이상
  - 보상관련 소송 승소율 제고 : 70% → 80% 이상

□ 가로환경 개선

○ 내 용 :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 노점상 및 가로시설물 현황(2000. 12. 31현재)

(단위 : 개소)

계	노점상	노상적치물	가로판매점	구두담이박스	토콘박스
2,946	1,207	1,402	171	133	33

○ 추진계획

- 절대금지구역 : 강력단속

- 상대금지구역 : 자율정비 추진

- 노선별 단속책임 지정관리 : 3개구역 14개소 등

2001년  
주요업무계획

토 목 과

# I. 2001년 주요사업계획

## 1. 사업목표

- 도로개설 확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하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시민생활 안전 확보
- 보행자 안전위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구민의 생활안전 확보
- 맑고 깨끗한 지하수 환경기반 조성

## 2. 2001년 건설사업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총계		2001년사업비				2000년사업비		비고
			구 비		시 비		구비·시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8	28,993	24	6,000	4	6,146	20	16,787	
도로건설	18	14,973	9	3,160	-	-	9	11,813	
하수관리	7	4,136	4	790	3	3,346	-	-	
도로관리	15	8,184	8	1,700	1	2,800	6	3,684	
도로조명	8	1,640	3	350	-	-	5	1,290	

## Ⅱ. 2001년 주요 건설사업 현황

### 1. 도로건설 분야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비고
			계	구비	시비		
소계			14,973	7,596	7,377		
1	가회동~감사원간 도로개설 공사(3차)	B=20 L=205m	2,531		2,531	'99.10~ 2001. 4	계속(이월)
2	필운동~신교동간 도로개설 공사(3차)	B=12~15m L=180m	410	410		2000.12~ 2001.11	계속(이월)
3	송인동411~431간 도로개설 공사	B=10m L=100m	300	300		2001. 3~ 2001.12	계속
4	송인1동61~59간 도로개설 공사	B=6m L=140m	200	200		"	계속
5	명륜4가206~155간 도로개설 공사	B=6m L=230m	300	300		"	계속
6	성대후문~양현관간 도로 개설공사	B=6m L=140m	500	500		"	계속
7	혜화여고주변 도로개설공사	B=6m L=100m	560	560		"	계속
8	창성동109~131간 도로개설 공사	B=6m L=140m	300	300		"	신규
9	송인1동123~10-16 도로개설 공사	B=4m L=70m	200	200		"	신규
10	돈의동~묘동184간 도로개설 공사	B=6m L=150m	500	500		"	신규
11	통의동70~35간 도로개설 공사	B=6m L=210m	300	300		"	신규
12	충신동65~56-7간 도로개설 공사	B=6m L=130m	500	500		"	계속(이월)
13	종묘~인의동49-3간 도로 개설공사	B=6m L=90m	600	600		"	계속(이월)
14	대학로~충신시장간 도로 개설공사	B=20m L=300m	3,000		3,000	"	계속(이월)
15	세검정로타리 가각정비공사	B=23m L=77m	600		600	"	계속(이월)
16	세검정초등학교방음벽설치 공사	H=6m L=100m	246		246	"	계속(이월)
17	누하동35~93간 도로개설공사	B=6~12m L=210m	1,000		1,000	"	계속(이월)
18	돈화문길 걷고싶은 도시만들 기 시범가로조성사업	B=20~22m L=790m	2,926	2,926		2000.12~ 2001.12	계속(이월)

## 2. 하수시설 확충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비고
			계	구비	사비		
소계			4,136	790	3,346		
1	관내도로시설물보수공사	D=300~800mm L=1,500m	400	400		2001.1~12	신규
2	관내하수도준설공사	V=1,000m <sup>3</sup>	200	200		"	신규
3	관철동6-3*18-11간 하수도 정비공사	D=600mm L=250m	150	150		"	신규
4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L=4,045m	40	40		"	신규
5	종로1가~소격동55 하수암거 보수공사	박스5.2×2.5m L=200m	500		500	"	계속
6	청계천 복개구조물준설	V=1,800m <sup>3</sup>	200		200	"	"
7	청계천좌안상류 관거정비	D=300~1000mm L=4200m	2,646		2,646	"	"

## 3. 도로조명 분야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비고
			계	구비	사비		
소계			1,640.5	770.5	870		
1	가로등유지보수사업	가로등 3591등 분전함 127면 가로등시설	100	100		2001. 3. 1~ 2001.12.31	신규
2	관내보안등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보안등 9185등 보안등개량 196등 보안등신설 313등	200	200		2001. 1. 1~ 2001.12.31	신규
3	보안등 표찰정비사업	보안등표찰 정비 4592개소	50.5	50.5		2001. 3. 1~ 2001. 7.30	신규
4	동대문시장주변 가로등개선	가로등설치 121본	680		680	2000.12.26~ 2001. 8.22	이월
5	성균관/대명길 가로등 설치 공사	가로등설치 30본	109		109	2000.11.11~ 2001. 6.15	이월
6	가회동-감사원길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등설치 11등 분전반설치 2면	50		50	2000. 8.31~ 2001. 4.30	이월
7	돈화문길 걷고싶은 도시만들 기 시범가로전기공사	가로등설치 59본 연출등설치 101본 가로등철거 33본	420		420	2000.12.26~ 2001.12.25	이월
8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 가로등 이설 및 보행등설치공사(종로측)	가로등이설 9본 보행등설치 10본	31		31	2000. 8.29~ 2001. 6.30	이월

## 4. 도로관리시설 확충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비고
			계	구비	사비		
소계			8,184	3,430	4,754		
1	세검8교 재설치공사	B=4.3m L=21.4m	260	260		2000.12~ 2001. 6.30	계속(이월)
2	세운상가테크보수공사	B=8m L=223m	1,010	1,010		2000.11~ 2001. 8.30	계속(이월)
3	시민안전,불편사항보수 및 정비공사	포장 A=20a	160	160		2000.11.22~ 2001. 6.30	계속(이월)
4	동대문상가주변 보도정비공사	투수콘포장 A=30a	310		310	2000.11.23~ 2001. 4.17	계속(이월)
5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 토목공사(종로측, 대학로측)	중앙분리대 설치340m 기타1식	590		590	2000. 8.25~ 2001. 6.30	계속(이월)
6	도로시설물보수공사	시설물41 개소	300	300		2001. 3~ 2001.12.31	신규
7	관내도로보수공사	도로포장 A=300a 경계석설치 L=1,000m	800	800		"	신규
8	관내불량맨홀정비공사	맨홀보수 100개소	100	100		2001. 6~ 2001.11	신규
9	평창45교 보수공사	B=7.5m L=25m	100	100		2001. 4~ 2001.11	신규
10	인사동154-5~914-45간 통행로 연결공사	B=2~3m L=20m	50	50		"	신규
11	제설작업 용역비	북악산길외 12개노선	40	40		2001.12~ 2002. 3.15	신규
12	보도육교정밀안전진단 (이화,신영동로터리)	보도육교 2식	40	40		2001. 3~ 2001.11	신규
13	도로유지보수 재료비	시멘트등	270	270		2001. 2~ 2001.12	신규
14	경북궁길 역사탐방로 조성사업 결공사	B=3~8m L=2200m	2,800		2,800	"	신규
15	성균관/대명거리 역사탐방로 조성공사	B=629m L=730m	1,354	300	1,054	2000.10.16~ 2001. 5.30	계속(이월)

### Ⅲ. 기타 주요업무 추진계획

#### 1. 건설사업 부실 및 부조리 근절대책

우리구 2001년 건설사업의 부실방지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주요공정 중간검사제, 공사실명제, 불법하도급 근절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실공사 추방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 중간검사제 실시

- 주요 구조물 (옹벽, 하수BOX, 기타 특수공종) 공사는 주요 공종별 단계마다 공사전 전문가 입회하여 중간검측 검사를 받아 다음 공종을 시공함으로써 완벽한 구조물 시공
- 부실시공 적발시에는 철거 및 재시공 시행
- 주요 구조물(옹벽, 하수BOX, 기타 특수공종)은 우리구에 보유 중인 품질시험 장비를 활용 정밀시공 검측

##### □ 공사실명제 실시

- 대 상 : 2001년도 주요 건설사업
- 공사준공 후 시공업체의 책임감 고취를 위하여 시설물에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현장소장 명기(맨홀내부 및 하수관 상단 부착)

##### □ 불법하도급 근절

-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 일반하도급 : 영업정지( 1년 이내 ) → 면허취소
  - 허위보고 : 과태료( 250만원 이하 ) → 영업정지( 6개월 이하)

##### □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

- 공사감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접대화 금품수수 금지토록 교육강화
- 시공업체에 공사감독원 접대 및 금품 제공근절 협조 공한문 발송
- 민원인과 시공업체가 공사감독원 부재중 모르게 놓고간 금품등 부조리 발생시에는 감사실에 즉시 신고

## 2. 재해없는 종로만들기(수방,제설대책)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재행정(수방대책,제설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없는 종로만들기를 실현코자함.

### 1) 수방대책

#### □ 추진목표

- 시민의 안전욕구 증대에 따른 예방위주의 방제 행정 실시
- 2001년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방제 전산화·과학화 구현
- 재해관리의 종합적 체계개선 및 안전한 방제계획 수립

#### □ 주요 추진일정(계획)

- 재해사전대비 강화 : 2001.3.15 ~ 2001.5.15
- 최종점검 및 보완 : 2001.5.16 ~ 2001.6.14
- 재해대책본부 운영 : 2001.6.15 ~ 2001.10.15

#### □ 추진방향

- 재해사전대비 업무의 철저한 준비(하수관 준설 및 개량공사 실시)
- 수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정비 강화
- 수방물자와 구호·방역물자의 사전 비축
- 지속적인 홍보와 수방요원들에 대한 실질적 교육실시
- 지하보·차도등 침수 예상 도로의 안전과 교통대책 강화
- 피해발생시 응급복구·구호·방역·급수·청소등 상황대처 능력배양

## 2) 제설대책

### □ 추진목표

- 제설대책의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 강설에 대비한 기상정보 파악 및 사전대기로 초동제설 체계확립
- “내 집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건전한 시민정신 정착

### □ 주요 추진일정(계획)

- 제설대책본부 운영 : 2000.11.15 ~2001.3.15
- 제설대책 종합평가 보고회 : 2001.2.15 ~2001.3.15

### □ 추진방향

- 구청 및 각동 제설대책본부 구성
- 주민자율 제설반, 공익근무요원제설반, 유관기관 제설작업 공조체제 구축
- 제설작업 취약지점 제설함 설치 및 담당자 제정 운영
- 강설에 대비한 기상정보 사전파악 및 철저한 상황유지
- 강설 즉시 취약지점 우선순위에 따라 초동제설 실시
- 폭설시 직원 및 유관기관, 주민동원 제설 총력 체계 구축

### 3. 지하수 방치폐공 일제정비

지하수법제정 이전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다가 폐지된 590개소의 관정중 원상복구되지 않고 방치폐공으로 남아 있는 관정을 찾아내어 2001년까지 지하수 이용자들에게 원상복구토록 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맑고 깨끗한 지하수환경 기반을 조성코자함

#### □ 추진목표

- 방치폐공 현황 및 현장 표본조사(제1단계 : 실태파악)
- 전수조사 및 원상복구 병행 추진(2.3단계 : 방치폐공 일제정비 계획추진)
- 미조사 폐공 및 원상복구 최종정비(4.5단계 : 정비완료)

#### □ 사업개요

- 대 상 : 폐공 590개소
- 사업기간 : '97.5.7 ~ 2001.12.31
- 사업비 : 비 예산사업(원인자 부담)

#### □ 추진계획

- 2000년도 계획
  - 대 상 : 주소불명 방치폐공 재확인 및 자진신고 폐공
  - 추진기간 : 2001.3.1 ~ 12.31
  - 추진방법 : 방치폐공 점검반 편성조사 및 이용자 원상복구
  - 소요예산 : 지하수 이용자 부담(원인자 부담 원칙)
  - 재조달 : 비 예산사업

2001년  
주요업무계획

교통행정과

##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백만원)
1.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6개소(청운동등)</li> <li style="padding-left: 20px;">- 면 적 : 3,685㎡ (1,116평)</li> <li>○ 추진계획</li> <li style="padding-left: 20px;">- 2001. 1 ~1.31 :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일제조사</li> <li style="padding-left: 20px;">- 2001. 2 ~ 4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li> <li style="padding-left: 20px;">- 2001. 4 ~ 6 : 매수협의를 및 계약체결</li> </ul>	6,000
2.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7개소(창신동82번지 등)</li> <li style="padding-left: 20px;">- 주차대수 : 171대</li> <li>○ 추진계획</li> <li style="padding-left: 20px;">- 명륜1가 5-14 주차장건립(54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1 ~ 2 터파기등 기초작업</li> <li>· 2001.3 ~ 7 공사시행</li> </ul> </li> <li style="padding-left: 20px;">- 동승동 31-35 주차장건립(28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1 ~ 2 기본 및 실시설계</li> <li>· 2001.3 ~ 7 공사시행</li> </ul> </li> <li style="padding-left: 20px;">- 창신1동 82 주차장건립(44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1 ~ 2 현장조사</li> <li>· 2001.3 ~ 5 기본 및 실시설계</li> <li>· 2001.6 ~11 공사시행</li> </ul> </li> <li style="padding-left: 20px;">- 신교동 66외3개소 공영주차장건립(8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6 ~ 7 현장조사</li> <li>· 2001.7 ~ 9 기본 및 실시설계</li> <li>· 2001.9 ~12 공사시행</li> </ul> </li> </ul>	1,100
3.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확대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이면도로 주차구획 700면, 일방통행제 50개소</li> <li>○ 추진계획</li> <li style="padding-left: 20px;">- 2004 ~ 12 : 주차장 수요,공급 실태 조사 및 이면도로 주차 구획설치 및 일방통행 2단계추진(2개권역)</li> <li style="padding-left: 20px;">- 2001.1 ~ 6 : 4개권역 확대(여론조사 및 유관기관 협의 등)</li> <li style="padding-left: 20px;">- 2001.3 ~ 7 : 시설물 설치(주차구획,일방통행표지 등)</li> <li style="padding-left: 20px;">- 2001.8 ~ 11 :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교통지도과)</li> </ul>	587 (시비406, 구비181)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백만원)
4.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1,44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 설 - 도로안내표지판등 538건</li> <li>- 정 비 - 과속방지턱 재도색등 905건</li> </ul> </li> <li>○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1 ~ 3 : 1차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li> <li>- 2001.4 : 구매, 설치</li> <li>- 2001.7 ~ 9 : 2차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li> <li>- 2001.10 : 구매, 설치</li> </ul> </li> </ul>	390
5. 주차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 표 : 4,60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 설 - 주차금지표지판등 300건</li> <li>정 비 - 이면도로 주차구획선등 4,300건</li> </ul> </li> <li>○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1 ~ 3 : 1차현장조사 및 실시설계</li> <li>· 2001.4 : 구매, 설치</li> <li>· 2001.7~9 : 2차현장조사 및 실시설계</li> <li>· 2001.10 : 구매, 설치</li> </ul> </li> </ul>	267

2001년  
주요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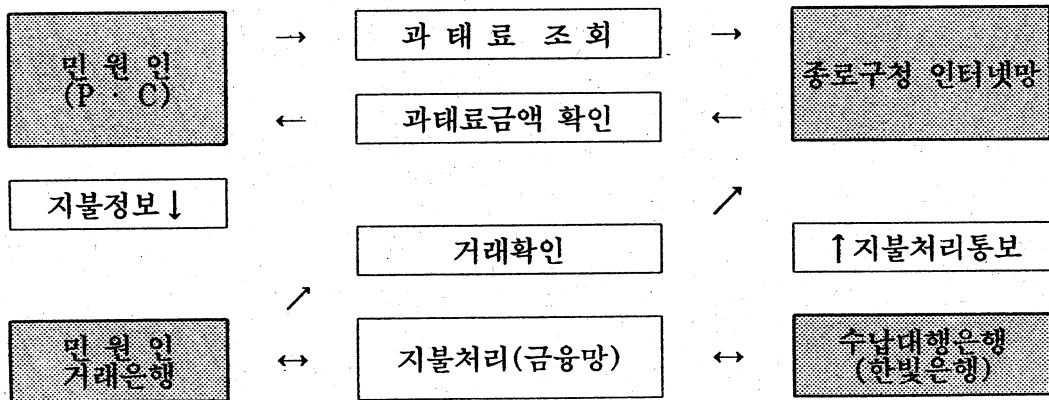
교통지도과

#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 □ 주차관리 전산화사업 추진

###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47,000천원
- 인터넷민원 서비스 처리흐름도



### ○ 추진계획

【 년차별 주차관리전산화사업 구축운영 및 계획 】

제1단계(1999년도)	제2단계(2000년도)	제3단계(2001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상데이터시스템구축</li> <li>- 디지털카메라40대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데이터통신장비구입</li> <li>- 스마트폰23대 구입완료</li> <li>- 주차위반관리시스템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서비스망 구축</li> <li>- 인터넷 과태료 조회 및 과태료 수납뱅킹 프로그램개발</li> </ul>

## □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적 운영

### ○ 추진개요

- 단속인원 : 49명(구분청 : 15개조 49명)
- 단속차량 : 5대 (승합차2대, 승용차3대)
- 단속방법 : 차량을 이용한 단속 및 도보에 의한 단속

○ 추진계획

- 평시 주차단속 운영 계획

- 단속지역 : 종로구 전지역(간·지선도로 및 이면도로)
- 단속시간 : 근무시간내(09:00 ~ 18:00)

- 특별기동반 편성운영 : 민원발생 및 통학로 주변 등

- 단속지역 : 혜화초등학교 주변외 6개소, 옥인동 4거리
- 단속시간 : 조간 및 야간 단속

- ┌ 조간조(1개소 4명 : 차량이용) → 07:00 ~ 15:00
- └ 야간조(1개소 4명 : 차량이용) → 18:00 ~ 23:00

□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

○ 추진개요

-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 2,234면 2,092백만원

- 민간위탁 : 552면 1,565백만원    · 직영 : 1,682면 527백만원

- 공영주차장 시설물정비 (소요예산 : 10,000천원)

- 공영주차장정비대상 : 85개소 2,234구획
- 민간위탁 : 24개소 552구획, 직영 : 61개소 1,682구획

○ 추진계획

- 임대수입 징수율 제고

- 노상 및 노외주차장 :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위탁 위주
- 거주자 우선주차장 : 구청 및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

- 공영주차장 시설물정비 : 정기 및 수시점검

- 안내표지판등 시설물현황 : 85개소 2,234면
- 정기점검 : 년2회 (상,하반기) → 교통행정과 주관
- 주차구획선 상태 및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등 점검

## □ 버스전용차로 운행질서 확립

### ○ 추진개요

- 단속구간 : 5개노선 총연장 18.6Km(14개지점 28개조)
- 단속인원 : 64명(단속원 34명, 공익요원 30명)
- 단속근무 : 1일 2교대 근무(평일07:00~21:00, 토요일 07:00~15:00)
- 과태료 징수예상 : 1,556백만원(현년도 1,174백만원, 과년도 382백만원)

### ○ 추진계획

- 단속인력 배치의 효율화 및 탄력적 지도단속
  - 단속인력효율적운영 : 근무환경 변화유도로 근무태만 방지(순환제)
  - 위반차 단속강화 :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위반지역 수시 이동단속
  - 탄력적 단속운영 : 낮 시간대 차량흐름에 따라 단속조정
-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징수 증대
  - 매월1회 정기부과 : 신속·정확한 부과고지로 징수실적 제고
  - 과태료 체납예방 : 관련법규 등의 친절 명확한 설명으로 자진납부 유도
  -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납부독촉 고지서 수시발부 및 신속한 압류시행)

##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율 제고

### ○ 추진개요

- 과태료 부과 : 5,985백만원(2000년 대비 증 5.6%)
- 과태료 징수 : 3,730백만원(2000년 대비 증 4.4%)
  - 현년도 : 1,860백만원    · 과년도 : 1,870백만원

### ○ 추진계획

-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유지
  - 전산종합시스템 운영개선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관리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종합관리 함으로써 부과의 적정성 확보 및 징수율 제고
  - ※ 과태료부과 기간단축 : 2개월 → 1개월

- 『인터넷 민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운용
- 인터넷을 이용하여 과태료 조회, 납부등을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민원인에게 편의제공과 징수율 제고 기대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
-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압류등록 조치를 하고 고액 체납자는 차량압류외에 대체재산을 압류하는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
- 체납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제 시행

